##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720 제출연월일: 2024. 7. 12.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 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 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있도록 함.

#### 법률 제 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이하 "검사대행지역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검사대행지역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승강기 정기검 사 예상 물량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기존 지정검

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 관의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제1항"을 "제3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제3항) 중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을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모집에 응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5의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38조제1항 중 "제37조제2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80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제37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	대행) ①
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	
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	
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7조제1항</u> 에 따라 정기검	2. <u>제36조의2제1항</u>
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	
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	
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36조의2(정기검사 업무 대행기
	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
	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
	인・단체 또는 기관을 정기검
	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
	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정할 수 있다.

- ②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이하 "검사대행지역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법인·단 체 또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검사대행지역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시·도별 승강기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시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사기
 관의 지정 및 평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 소 등) <삭 제>

<u>①</u>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u>제1항</u>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u>신</u> 설>
- 6. ~ 8. (생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 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 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 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 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을 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의2제1항
ο. <u>Μουμέν ΙΔΑΠΙ ο</u>
<u>5의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u>
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 8.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5
호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제1
<u>ŏ</u> }
• তি না 1 হা
<u>③</u> 제1항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모집에 응할
<u> </u>

- ⑤ <u>제2항</u>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경우로서 그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업무정지 처분을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③ (생략)
- 제77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
    사기관의 지정 취소
  - 3. (생략)
  - ② (생략)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u>④</u> 제1항
<u>.</u>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
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
하는 과징금) ①
<u>제37조제1항제3호부터</u>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청문) ①
<u>.</u>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제1항
2. <u>101410</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① (생략)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1. ~ 7. (생 략) <신 설>
- 8. ~ 11.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8. (생략)
  -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37조제1항</u>에 따 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20. <u>제37조제1항</u>에 따라 지정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 21. <u>제37조제2항</u>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8.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①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36조의2제1항
20. 제36조의2제1항
21. 제37조제1항

정기검사를 한 자	
22. ~ 28. (생 략)	22.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